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1가단1128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,947,644원 및 그중 99,457,171원에 대하여 2021. 2. 27.부터 2021. 6. 23.까지 연 9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송명주

별지